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항공보안 시행계획 등을 협의하기 위한 항공보안협회의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, 위원 이외에 협의회의 참석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항공보안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기관 의견 조회 결과 이견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

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항 중 “항공보안과장”을 “항공보안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협의회 회의는”을 “위원장은 항공보안 시행계획 등을 협의하기 위해 협의회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,”로, “위원장이 소집하고”를 “소집할 수 있으며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당연직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관계공무원 또는 항공보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”을 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당연직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관계공무원
2. 항공보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3. 항공교통관제기관 소속 직원 중 협의회 안전과 관련된 사람
4.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협의회 안전과 관련된 사람
5. 그 밖에 협의회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업체를 대표하는 사람

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	정	안
<p>제2조(구성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협회의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<u>항공보안과</u>장으로 한다.</p> <p>제5조(회의 등) ① <u>협회의의 회의</u>는 재적위원 1/3이상 <u>이</u>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<u>위원장이</u> 소집하고, <u>위원장이</u>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 ~ ⑦ (생략)</p> <p>제7조(의견청취 등)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<u>당연직인</u> <u>위원이</u> 소속된 <u>기관의</u> <u>관계공무원</u> 또는 <u>항공보안 분야에</u> <u>관한</u> <u>학식과</u> <u>경험이</u> <u>풍부한</u> <u>전문가</u>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항공보안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2조(구성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----- <u>항공보안정책과장</u>-----.</p> <p>제5조(회의 등) ① <u>위원장은</u> <u>항공보안 시행계획</u> 등을 <u>협의하기</u> 위해 <u>협회의의</u> <u>회의를</u> <u>매년</u> <u>1회</u> 이상 소집하고, ----- ----- <u>소집할</u> <u>수</u> <u>있으며</u>----- -----.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의견청취 등) ----- ----- <u>다음</u> <u>각</u> <u>호에</u> <u>해당하는</u> <u>사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당연직인</u> <u>위원이</u> <u>소속된</u> <u>기</u> <u>관의</u> <u>관계공무원</u></p> <p>2. <u>항공보안</u> <u>분야에</u> <u>관한</u> <u>학식</u></p>		

<p><u><신 설></u></p>	<p>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</p> <p>3. <u>항공교통관제기관 소속 직원</u> <u>중 협의회 안전과 관련된 사</u> <u>람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4. <u>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</u> <u>중 협의회 안전과 관련된 사</u> <u>람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5. <u>그 밖에 협의회 안전과 관</u> <u>련된 기관 또는 업체를 대표</u> <u>하는 사람</u></p>